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원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건설위탁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 범위에 기존의 건설사업자 외에 환경과 에너지관계법에 의한 등록업자를 포함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법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추가 및 에너지어링업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관련사업자 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수급사업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1조(목적) 이 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確立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相互補完的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加工委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修理委託 또는 建設委託을 하거나 原事業者가 다른 事業者로부터 製造委託·修理委託 또는 建設委託을 받은 것을 受給事業者에게 다시 委託을 하고, 이를 委託(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受給事業者가 위탁받은 것(이하 "目的物"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施工하여 이를 原事業者에게 납품 또는 引渡(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原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者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事業者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者
2. 중소기업자 중 直前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의 도급한도액의 합계액을, 연간 매출액이나 도급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의 2倍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연간매출액 또는 當時雇傭從業員數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③이 法에서 "受給事業者"라 함은 제2항 各號의 규정에 의한 原事業者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 또는 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

분을 第3者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 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 第3者를 각각 이 法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로 본다.(개정 1992년 12월 8일)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2년 12월 8일)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受給事業者로 본다.
2.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受給事業者로 보지 아니한다.

⑥이 法에서 "製造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및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설

⑦이 法에서 "修理委託"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業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業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⑧이 法에서 "建設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3.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소방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者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자

제3조(書面의 交부 및 書類의 保存)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 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書面에는 下都給代金과 그 支給方法 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原事業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都給去來에 관한 書類를 保存하여야 한다.

제3조의2(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내용)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되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게 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을 勸奬할 수 있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目的物과 同種 또는 類似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各目如何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減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受給事業者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受給事業者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受給事業者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原事業者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目的物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受給事業者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受給事業者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原事業者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原事業者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2년 12월 8일)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原事業者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受給事業者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原事業者가 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製造委託하는 경우에는 原信用狀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但書新設 1992년 12월 8일)

제8조(부당한 受領拒否의 금지 및 영수증의 교부) ①原事業者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目的物의 납품에 대해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受給事業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原事業者는 目的物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目的物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檢査完了 즉시) 수령증명서를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目的物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수령"이라 함은 受給事業者가 납품한 目的物을 받아 사실상 原事業者의 支配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移轉이 곤란한 目的物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간) ①受給事業者가 납품 또는 引渡한 目的物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公正·妥當하여야 한다.

②原事業者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受給事業者로부터 目的物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로부터 시

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受給事業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不當返品의 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로부터 目的物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受給事業者에게 반품(이하 "不當返品"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不當返品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經濟狀況의 변동 등을 이유로 目的物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目的物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原事業者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目的物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原事業者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目的物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不當減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受給事業者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遡及適用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過多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原事業者에 대한 損害發生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受給事業者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目的物의 제조·수리 또는 施工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당한 購買代金 또는 使用代價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控除하는 행위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目的物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目的物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第3者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目的物의 수령일(建設委託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년 12월 8일)

1.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目的物의 수령일을, 目的物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目的物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原事業者가 建設委託을 한 경우에 原事業者가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로부터 竣工金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旣成金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시공한 分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到來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原事業者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目的物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目的物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目的物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原事業者가 하도급대금을 目的物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년 12월 8일)

⑥제4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2년 12월 8일)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受給事業者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分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原事業者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原事業者의 受給事業者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할 것으로 본다.

제15조(關稅 등 還給額의 지급) ①原事業者가 수출할 물품을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한 경우에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特例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受給事業者에 대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受給事業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目的物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原事業者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2년 12월 8일)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原事業者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經濟狀況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目的物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原事業者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한 代物辨濟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의 意思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原事業者는 하도급거래량을 調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受給事業者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報復措置의 금지) 原事業者는 자기가 이 法을 위반하였음을 受給事業者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脫法行爲의 금지) 原事業者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法의 적용을 免脫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受給事業者의 준수사항) ①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의 이 法 위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受給事業者는 이 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누구든지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受給事業者로부터 原事業者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原事業者에게 통지한 때에는 民法 제174조에 의한 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却下 또는 棄却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년 12월 8일)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

③협의회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是正措置)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原事業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 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③삭제 (1990년 1월 13일)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原事業者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公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 2(供託)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가 辨濟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受給事業者를 위하여 변제의 目的物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原事業者가 過失없이 受給事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2년 12월 8일)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長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長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長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長에게 이 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建設業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公正化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獨占規制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律의 準用) ①이 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법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이 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異議申請·訴의 제기 및 不服의 訴의 專屬管轄에 관하여는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準用한다.

②이 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準用한다.

③이 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委員, 公務員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이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者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準用한다.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律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罰則)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者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년 12월 8일)

제30조(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受給事業者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 또는 原事業者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면을 교부한 原事業者
2.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保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보존한 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
3.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者
4.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년 12월 8일)

1.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者
2. 제25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者

③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律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2년 12월 8일)

제30조의 2(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律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準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律 제50조 제1항 제3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者
3.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準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律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賦課·徵收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者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裁判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勢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1992년 12월 8일)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대표자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 各項의 벌금형을 科한다.

제32조(告發) 제30조의 罪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2년 12월 8일)

제33조(過失相計) 原事業者의 이 法 위반 행위에 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參酌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전기공사업법·建設業法·전기통신공사사업법의 규정이 이 法에 抵觸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다.

제35조(시행령)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2조·제13조 제4항 및 제1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